

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

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의 일부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

2024년 3월 26일

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



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

제 정 2021. 11. 04. 규정 제14호
개 정 2021. 12. 27. 규정 제22호
개 정 2022. 08. 25. 규정 제29호
개 정 2022. 09. 08. 규정 제30호
개 정 2022. 12. 05. 규정 제31호
개 정 2023. 10. 25. 규정 제51호
개 정 2024. 03. 26. 규정 제56호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정원과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하여는 「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및 「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직제의 개편) 기구 및 정원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2 장 구성원

제4조(구성원) 공단에는 이사장, 비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.

제5조(이사장)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제6조(비상임이사) 비상임이사는 7명 이내로 하며, 2명은 당연직으로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국장급(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 공무원 중

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. <개정 2022.09.08>

제7조(감사) ① 감사는 구의 기획실장으로 한다.

② 감사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.

제8조(직원) ① 직원은 일반직, 환경직, 공무원직으로 구분한다.

② 일반직은 행정, 기술로 구분하고 직급은 3급부터 7급으로 구분한다.

<개정 2022.09.08.>

제9조(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,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팀내 차순위 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고문)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호사, 노무사, 회계사, 공단업무관련 전문가 등 고문을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 3 장 조 직

제11조(기구) ①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아래에 경영기획팀, 운영지원팀, 생활환경팀, 자원순환팀, 시설운영팀을 둔다. <개정 2022.8.25.>

② 기구표는 “별표 1”과 같다. <개정 2022.8.25.>

제12조(직위 · 직급) ① 본부장은 3급 직원으로 보하고, 각 팀장은 4급 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해당 직급의 직원이 없을 경우 하위 직급의 직원 중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.

② 5급은 차장으로, 6급은 대리로, 7급은 주임으로 한다.

제13조(정원) ① 공단의 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다.

〈개정 2021.12.27., 2022.8.25., 2022.12.05., 2023.10.25.〉

② 임금피크제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외 인력(별도정원)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사무분장) ① 팀 단위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으며, 팀별 세부 사무분장은 내규로 정한다. 〈개정 2022.8.25., 2024. 3. 26〉

1. 경영기획팀 : 기획, 경영평가, 조직, 인사 등 관련 업무
2. 운영지원팀 : 예산, 결산, 계약, 급여 등 관련 업무
3. 생활환경팀 : 종량제·음식물·재활용 수집·운반 등 관련 업무
4. 자원순환팀 : 재활용품 선별·처리,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 관련 업무
5. 시설운영팀 : 시설물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관련 업무

② 팀 단위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은 해당 팀장이 한다.

③ 팀 간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장이 결정하고, 본부 간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,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.

④ 각 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15조(직무수행과 책임)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이 수행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이사장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(파견자 보직) 이사장은 공단사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게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7조(위임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<규정 제22호 2021.12.27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<규정 제29호 2022.8.25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<규정 제30호 2022.9.8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<규정 제31호 2022.12.5.>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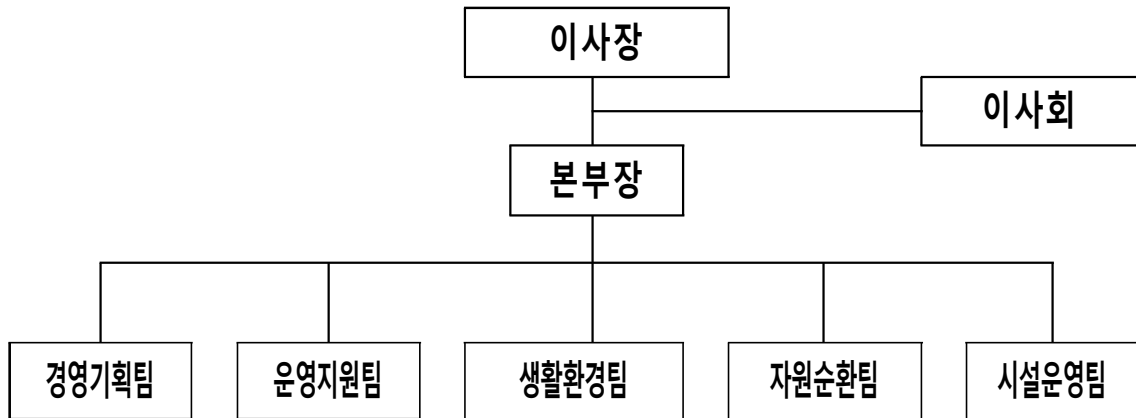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<규정 제51호 2023.10.25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<규정 제56호 2024. 3.26.>

[별표 1] <개정 2022.8.25.>

기구표(제11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 <개정 2021.12.27., 2022.8.25.,2022.12.05., 2023.10.25. 2024. 3. 26 >

정원표(제13조제1항 관련)

□ 상임임원, 일반직, 환경직, 공무원직

(단위 : 명)

구 분		합 계	임 원	경 기 기 획	영 팀 영 지	운 원 영 팀	생 활 환 경	활 팀	자 순 원 환	원 팀	시 운 영 팀	설 영 영 팀
합 계		236	1	6	<u>5</u>		<u>143</u>		52		29	
이사장		1	1									
일 반 직	소계	21		6	<u>5</u>		<u>4</u>		2		4	
	3급	1		1								
	4급	5		1	1		1		1		1	
	5급	5		2	1				1		1	
	6급	6		2	<u>2</u>		<u>1</u>				1	
	7급	4			1		2				1	
환경직		184					136		48			
공무직		30					3		2		25	

[별표 3] <개정 2022.8.25.> <삭제 2024. 3. 26 >